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1156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의 목적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 재계약하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수탁운영
- 위탁기간 : 2024. 2. 1. ~ 2029. 1. 31. (5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사무
 -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 학생 임상 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연구
- 기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나. 소요예산 : 14,579,870천원 ('23년 예산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재난시 응급의료 활동 등 서울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라. 심의결과 : 적정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공의료추진반 시립병원강화팀 전철(☎ 2133-9244)